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특별재난지역이외 지역이라도 코로나19 기부금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법령법인-275, 2020.03.26

질 의

사실관계

- A법인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모금하였음
- 질의내용
-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 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

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상속증여-1707, 2020.02.28

질 의

사실관계

- △△법인은 ○○시의 재활용수거,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임
- ○○시의 청소구역은 A, B, C, D 총 4구역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구역에 필요한 청소인원은 ○○시에서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음
 - 지역별 청소 지정인원 : A(60명), B(50명), C(48명), D(55명)
- ○○시의 청소구역을 관할하는 업체는 △△법인을 포함하여 총 4개로 매년 입찰을 통해 청소구역을 1년간 계약하고 있으며(매년 관할 구역이 달라짐)
- 청소구역이 달라져 고용인원을 해고해야 경우에는 ○○시의 권고사항에 따라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업체에 이직 시키는 사항임

질의내용

- ○○시의 정책에 따라 매년 고용인원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기준고용인원 산정 방법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내국법인이 해당 중국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법령국조-1177, 2020.04.17

질 의

◦ 내국법인이 약 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내국법인이 직접 해당 중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중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한 경우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할 수 있음

서면법인-75, 2020.05.26

질 의

◦ 질의법인은 2018년 회계감사시 2016 ~ 2017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분의 재무상태표에 오류(매출, 매출원가 과대)가 확인되었으며,

- 해당 사업연도의 별도의 세무조정(경정청구) 없이 과년도 오류분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여 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
- 회계법인은 질의법인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거래를 구매대행거래로 판단함

질의내용

- 과년도(2016~2017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오류를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으로 반영한 경우
- 당해연도(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과년도(2016 ~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 할 수 없으므로 기 신고된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 ·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을설) 갑설에서 주장하는 수정신고 ·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수정신고 ·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